

『구미보 주유소 및 휴게소 부지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청원』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가. 청원일자 : 2016년 11월 22일

나. 청 원 자 : 원평동 김정훈 외 1명

다. 회부일자 : 2016년 11월 23일

라. 상정일자 : 2016년 12월 1일

제209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소개의원 : 안장환 의원

나. 청원내용

- 민원대상지 구미보 휴게소 부지가 ‘관리지역’에서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 결정되는 과정 중에 민원 대상지를 적법훼손지로 인정치 않고 토지적성평가와 도시관리계획입안이 이루어져, 그 결과 민원대상지는 당시 현황을 전제로 하지 않은 채 특정 판정요소만 반영되어 ‘보전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이 결정되었음.
- 그로 인해 민원 대상지에 고객 편의시설(음식점)도 설치하지 못하여 청원인이 경제적인 고통을 겪고 있으며 부도의 위기에

봉착해 있어, 대구지방법원은 판결문상에서 민원대상지가 적법훼손지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는 견해를 밝힌 만큼, 민원 대상지에 대하여 현황에 기초한 토지적성평가를 거쳐 현 '보전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주기를 요청하는 청원임.

##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해당 없음.

○ 해당부서 의견 : 도시과

- 청원인은 도시관리계획 입안 당시 적법훼손지라고 주장하나 청원대상지의 토지적성평가는 2006년에서 2007년에 걸쳐 시행되었으며, 주민의견청취를 2007.12.26일에 지방일간신문에 게재하였고, 그 이후 청원인 등이 건축허가 후 공사착공신고(2008.08.05), 건축사용승인(2009.01.19), 토지형질변경 준공(2009.01.14)이 이루어졌음.
- 따라서 상기의 청원내용에 대한 종합 검토 결과, 적법훼손지는 타당하지 않으며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은 면적이 적고 또한 명분이 없어 불가하므로 청원대상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 입안은 불가함.

##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장 학 곤

□ 본 청원의 건은,

- 민원대상지 구미보 휴게소 부지가 '관리지역'에서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 결정되는 과정 중에 민원 대상지를 적법훼손지로 인정치 않고 토지적성평가와 도시관리계획입안이 이루어져,

그 결과 민원대상지는 당시 현황을 전제로 하지 않은 채 특정  
판정요소만 반영되어 ‘보전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이 결정  
되었기에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주기를  
요청하는 청원임.

○ 청원인들은 민원 대상지에 고객 편의시설(음식점)도 설치하지  
못하여 경제적인 고통과 부도의 위기에 봉착해 있으며, 대구  
지방법원의 판결문상에는 민원대상지가 적법훼손지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는 견해도 있는 만큼, 민원 대상지에 대하여 현황에  
기초한 토지적성평가를 거쳐 현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  
으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그러나, 해당부서인 도시과는 청원대상지의 토지적성평가는  
2006년에서 2007년에 걸쳐 시행되었으며, 주민의견청취를  
2007.12.26일에 지방일간신문에 게재하였고, 그 이후 청원인 등이  
건축허가 후 공사착공신고(2008.08.05), 건축사용승인(2009.01.19),  
토지형질변경 준공(2009.01.14)이 이루어진 점으로 보아 민원  
대상지를 적법훼손지로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용도  
지역 변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은  
면적이 적고 또한 명분이 없어 청원대상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 입안은 불가하다는 의견임.

○ 본 청원의 건은 관점에 따라 견해를 달리 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므로, 다양한 시각에서 검토될 필요성은 있어 보임.

□ 「구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1조 제2항에 따라,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에 해당되므로, 본회의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부의(附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생      략
-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의견서 채택

붙임 : 의견서 1부.